

# STM(Smart Teller Machine) 이용 약관

## 제 1 조 적용 범위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은행이 제공하는 STM을 이용하는 이용자 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 사이의 STM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제 2 조 용어 정의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"STM"이라 함은 화상인증(신분증 복사+얼굴사진 촬영, 음성녹음) 및 바이오인증이 가능하며 자동화기기 및 영업점 창구수준의 업무처리 완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화기기입니다.
  - 2. "바이오정보"라 함은 지문·홍채·정맥·얼굴·음성·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특징에 관한 정보로서,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합니다. 은행은 STM 이용과 관련하여 손바닥정맥을 바이오정보로 이용합니다.
  - 3. "바이오인증"이라 함은 개인의 고유한 "바이오정보"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  - 4. "전자적장치"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, STM 그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제 3 조 서비스 종류

은행이 STM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현금 입출금, 계좌 이체, 계좌신규, 대출, 제신고, 사고신고, 공과금 납부 등이며,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은행 홈페이지 및 ST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이용방법

-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을 확인 및 동의하고 본인 확인 등 STM의 이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,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인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.
- ② 자동화기기(ATM)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상기 제①항의 신청절차 없이 ST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#### 제 5 조 본인 확인 방법

- ① 자동화기기(ATM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접근매체(통장, 카드 등) 및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검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- 1. 화상인증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와 영상통화(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대조). 단,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영상통화의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위협이나 강압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본인 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- 2. 바이오인증



- 가.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와 바이오정보
- 나. 실명번호와 바이오정보

## 다. 휴대전화번호와 바이오정보

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서비스의 종류에 대하여 각 업무별 본인 확인 방법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며, 이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.

## 제 6 조 예금(투자상품 포함) 지급 처리 기준

- ①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등 해당 약관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본인확인 및 계좌번호와 통장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 은행이 정한 지급 기준으로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 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7 조 현금(수표) 입출금 및 계좌송금 한도

1회 출금한도(계좌송금 포함) 및 1일 출금한도(계좌송금 포함)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## 제 8 조 예금계좌 신규

- ① 이용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완료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② STM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인감 및 서명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 단, 이용자가 통장 발행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9 조 대출

- ① 이용자가 STM을 통해 예부적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제5조의 본인 확인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며, 대출금은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.

## 제 10 조 수수료

- ① 현금 입출금 및 계좌송금 등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합니다.
- ② 외화 환전 및 외화 송금 등 각종 업무의 수수료는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.
-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외 일부 업무에 대해서 은행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④ 수수료는 각종 업무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가 선택한 계좌에서 출금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정한 일부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.
- ⑤ STM에서 부과하는 각 업무 종류별 수수료 금액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

#### 제 11 조 이용 가능 시간

서비스 이용가능 시간(화상인증 가능시간 포함)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

## 제 12 조 거래 내용의 확인

이용자는 거래 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통신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통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## 제 13 조 거래의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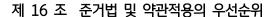
법적 지급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.

## 제 14 조 약관 변경

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제29조(약관의 변경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 15 조 손해배상 및 면책

-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 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 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·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  - 1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(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
  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 - 3.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4.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  - 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    -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  - 5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.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




- ① 이 약관의 해석•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 기타 제3조의 서비스 종류에 따른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, 은행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STM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약관이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## 제 17 조 관할법원

-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부 칙

- 1. 이 약관은 2018. 6. 29 부터 시행합니다.
- 2. 이 약관은 2019. 12. 6 부터 시행합니다.
- 3. 이 약관은 2021. 4. 12 부터 시행합니다.
- 4. 이 약관은 2022. 9. 5.부터 시행합니다.